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의제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,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 결정하고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9월 8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		지정목적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평동 164 일대	199,968.3	증) 70.5	200,038.8	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·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

-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
-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지구내에 주거·상업·업무 등의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·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
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	계				돈의문 1				돈의문 2 (변경없음)		돈의문 3 (변경없음)		비고
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
		기정	변경	변경후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
합 계		160,053.2	증)70.5	160,123.7	100.0	144,407.4	증)70.5	144,477.9	100.0	6,801.4	100.0	8,844.4	100.0	
택지 (획지)	계	111,100.1	증)727.9	111,828.0	69.8	99,189.2	증)727.9	99,917.1	69.1	5,510.1	81.0	6,400.8	72.4	
	주택 용지	94,385.3	증)727.9	95,113.2	59.4	94,385.3	증)727.9	95,113.2	65.8	-	-	-	-	
	종교 시설	1,671.2	-	1,671.2	1.0	1,671.2	-	1,671.2	1.1	-	-	-	-	
	상업 업무	15,043.6	-	15,043.6	9.4	3,132.7	-	3,132.7	2.2	5,510.1	81.0	6,400.8	72.4	
정 비 기 반 시 설 등	소계	48,953.1	감)657.4	48,295.7	30.2	45,218.2	감)657.4	44,560.8	30.9	1,291.3	19.0	2,443.6	27.6	
	공원	14,567.7	감)7,499.5	7,068.2	4.4	13,733.7	감)7,499.5	6,234.2	4.3	834.0	12.3	-	-	
	녹지	961.1	증)196.7	1,157.8	0.7	961.1	증)196.7	1,157.8	0.8	-	-	-	-	
	도로	26,591	증)280.7	26,871.7	16.8	23,813.3	증)280.7	24,094	16.7	457.3	6.7	2,320.4	26.2	
	공공 공지	2,132.5	감)2,009.3	123.2	0.1	2,009.3	감)2,009.3	-	0.0	-	-	123.2	1.4	
	광장	689.2	감)68.0	621.2	0.4	689.2	감)68.0	621.2	0.4	-	-	-	-	
	공공 청사	4,011.6	감)599.5	3,412.1	2.1	4,011.6	감)599.5	3,412.1	2.4	-	-	-	-	
	문화 시설	-	증)9,041.5	9,041.5	5.7	-	증)9,041.5	9,041.5	6.3	-	-	-	-	

※ 200,038.8㎡(지구면적) - 32,192㎡(돈의문4,5,6준치구역) - 7,723.1㎡(준치건물) = 160,123.7㎡

•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면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

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
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구분	개 소		면 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
합 계	3	4	4,011.6	증) 8,442.0	12,453.6	
문화시설	-	1	-	증) 9,041.5	9,041.5	
공공청사	3	3	4,011.6	감) 599.5	3,412.1	

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)

구분	명칭	개소		면적(㎡)		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9	9	18,350.5	감) 9,380.1	8,970.4	
공원	소계	4	5	14,567.7	감) 7,499.5	7,068.2	
	어린이공원	2	2	4,036.9	-	4,036.9	
	근린공원	1	-	10,039.4	감) 10,039.4	-	
	소공원	1	3	491.4	증) 2,539.9	3,031.3	
녹지	완충녹지	1	2	961.1	증) 196.7	1,157.8	
기타	소계	4	2	2,821.7	감) 2,077.3	744.4	
	공공공지	3	1	2,132.5	감) 2,009.3	123.2	
	광장	1	1	689.2	감) 68.0	621.2	

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
- ※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
-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
 - 새문안로~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

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
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	구역명	면 적(㎡)			사업방식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총 계			199,968.3	증) 70.5	200,038.8	
돈 의 문	촉진구역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152,130.5	증) 70.5	152,201.0	도시환경 정비사업
		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	6,801.4	-	6,801.4	
		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	8,844.4	-	8,844.4	
	존치정비구역	돈의문4존치정비구역	12,720.0	-	12,720.0	
돈 의 문	존치관리구역	돈의문5존치관리구역	16,617.0	-	16,617.0	지구단위 계획구역
		돈의문6존치관리구역	2,855.0	-	2,855.0	

-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

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

(1) 돈의문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144,407.4	증)70.5	144,477.9	100.0	
주거지역	소 계		140,593.0	증)70.5	140,663.5	97.4
	일반 주거	제1종	18,884.1	-	18,884.1	13.1
		제2종(7층이하)	4,720.8	-	4,720.8	3.3
		제2종(12층이하)	40,840.1	-	40,840.1	28.3
		제3종	76,148.0	증)70.5	76,218.5	52.7
상업지역	일반상업		3,814.4	-	3,814.4	2.6

-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
 - (2) 돈의문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 ~ (3) 돈의문3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)
 - (1) 돈의문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)

구분		면적 (㎡)	존치 면적 (㎡)	현 황(㎡)			사업구역 계획(㎡)					
명칭	계			대지	공공용지	계	사업시행 면적(㎡)	공공용지 부담계획(㎡)			공공용지 부담율 (%)	
								소계	기존	부담		
기 정	돈의문 1	144,407.4	548.5	143,858.9	111,798.5	32,060.4	143,858.9	102,652.3	41,206.6	32,060.4	9,146.2	8.18
변 경		144,477.9	548.5	143,929.4	111,869.0	32,060.4	143,929.4	102,780.7	41,148.7	32,060.4	9,088.3	8.12

- (2) 돈의문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 ~ (3) 돈의문3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- 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(해당없음)
- 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- 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- 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-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 - (1) 돈의문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)
 - 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경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원	152,130.5	증) 70.5	152,201.0	

- 촉진구역 변경 없는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
 - 나) 정비계획(변경)
 - 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144,407.4	증) 70.5	144,477.9	100.0	존치면적(7,723.1㎡)제외
택지(획지)	계	99,189.2	증) 727.9	99,917.1	69.1	
	주택용지	94,385.3	증) 727.9	95,113.2	65.8	· 지번누락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: 증) 60.4㎡ · 광장 면적 감소에 따른 획지1-2 면적 증가 : 증) 68.0㎡ · 파출소 이전에 따른 획지1-9 신설 : 증) 599.5㎡
	종교시설	1,671.2	-	1,671.2	1.1	
	상업업무	3,132.7	-	3,132.7	2.2	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정 비 기 반 시 설 등	소계	45,218.2	감)657.4	44,560.8	30.9	
	공원	13,733.7	감)7,499.5	6,234.2	4.3	·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 감소 : 감)9,312.1㎡ · 공공공지5 폐지 및 공원 신설 : 증)1,812.6㎡
	녹지	961.1	증)196.7	1,157.8	0.8	· 공공공지2 폐지 및 녹지 신설 : 증)196.7㎡
	도로	23,813.3	증)280.7	24,094.0	16.7	· 중로3-4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: 증)270.6㎡ · 지번누락정정의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: 증)10.1㎡
	공공공지	2,009.3	감)2,009.3	-	0.0	· 공공공지2 폐지 : 감)196.7㎡ · 공공공지5 폐지 : 감)1,812.6㎡
	광장	689.2	감)68.0	621.2	0.4	· 지적현황측량 및 획지1-2 계획용적률을 고려한 선형 조정
	공공청사	4,011.6	감)599.5	3,412.1	2.4	· 주민센터 면적 감소 : 감)367.1㎡ · 파출소 면적 감소 : 감)232.4㎡
	문화시설	-	증)9,041.5	9,041.5	6.3	·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

(나) 용도지역계획(변경)

구 분	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	144,407.4	증)70.5	144,477.9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	140,593.0	증)70.5	140,663.5	97.4	
	일반 주거	제1종	18,884.1	－	18,884.1	13.1	
		제2종 (7층이하)	4,720.8	－	4,720.8	3.3	
		제2종 (12층이하)	40,840.1	－	40,840.1	28.3	
		제3종	76,148.0	증)70.5	76,218.5	52.7	
상업 지역	일반상업		3,814.4	－	3,814.4	2.6	

-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

(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
① 도 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
기정	대로	2	3	35-40	주간선도로	4,750 (770)	봉래동2가43	홍은동450	일반도로	
기정	중로	2	43	16	집산도로	199	교남동55-1	송월동98-1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	40	13	집산도로	807	평동7-35	교북동35-8	일반도로	
변경	중로	3	40	13~16.5	집산도로	815	평동9-1	교북동35-8	일반도로	선형변경 폭원확대 노선연장
기정	중로	3	100	13	집산도로	148	교북동10-38	행촌동37-26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	101	13	집산도로	350 (205)	평동209-1	송월동68-4	일반도로	
기정	소로	1	101	11	국지도로	224	평동13-30	평동36	일반도로	
기정	소로	2	102	8	국지도로	314	송월동 2-2	행촌동1-66	일반도로	
기정	소로	3	103	4	국지도로	64	교북동 35-7	교북동10-9	일반도로	

주) ()안은 구역내 연장임

■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3-40	중로3-40	• 변경 - 선형변경 - 폭원 : B=13m → 13~16.5m - 연장 : L=807m → 815m	• 중로3-40호선 선형변경, 폭원 확대 및 노선 연장

② 공 원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①	공원	어린이공원	송월동 2-3 일원	3,202.9	-	3,202.9	
폐 지	②	공원	근린공원	신문로2가 37 일원	10,039.4	감)10,039.4	-	
기 정	③	공원	소공원	교북동 10-38 일원	491.4	-	491.4	
신 설	④	공원	소공원	송월동 94-1 일원	-	증)1,812.6	1,812.6	
신 설	⑤	공원	소공원	신문로2가 54 일원	-	증)727.3	727.3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공원	• 폐지 - 면적 : 10,039.4㎡	•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
④	공원	• 신설 - 면적 : 1,812.6㎡	•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을 제공
⑤	공원	• 신설 - 면적 : 727.3㎡	•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소공원 설치

③ 녹지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①	녹지	완충녹지	평동 108 일원	961.1	-	961.1	
신설	②	녹지	완충녹지	평동 16-1 일원	-	증)196.7	196.7	

■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②	녹지	• 신설 - 면적 : 196.7㎡	•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

④ 광장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광장	일반광장	교남동 58-5 일원	689.2	감)68.0	621.2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광장	• 변경 - 면적 : 689.2㎡ → 621.2㎡ (감:68.0㎡)	• 지적현황측량 및 획지1-2 계획용적률을 고려한 선형 조정

⑤ 공공공지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폐지	②	공공공지	공공공지	평동 16-1 일원	196.7	감)196.7	-	
폐지	⑤	공공공지	공공공지	송월동 32-43 일원	1,812.6	감)1,812.6	-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공공공지	• 폐지 - 면적 : 196.7㎡	• 완충녹지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
⑤	공공공지	• 폐지 - 면적 : 1,812.6㎡	• 소공원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

⑥ 공공청사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공공청사	주민센터	행촌동 180-10 일원	915.6	감)367.1	548.5	
폐지	②	공공청사	파출소	송월동 116 일원	599.5	감)599.5	-	
기정	③	공공청사	교통순찰대	행촌동 158-8 일원	2,496.5	-	2,496.5	
신설	④	공공청사	파출소	행촌동 180-17 일원	-	증)367.1	367.1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공공청사	• 변경 - 면적 : 915.6㎡ → 548.5㎡ (감:367.1㎡)	•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
②	공공청사	• 폐지 - 면적 : 599.5㎡	•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
④	공공청사	• 신설 - 면적 : 367.1㎡	•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

⑦ 문화시설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①	문화시설	-	신문로2가 6 일원	-	증)9,041.5	9,041.5	

※ 문화시설(토지 및 시설물)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,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

■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①	문화시설	• 신설 - 면적 : 9,041.5㎡	•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

■ 건축물규모 결정 조서

시설명	건폐율	용적율	높이	비고
문화시설	60%이하	150%이하	4층이하	제1종일반주거지역

(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시설의 종류	면 적	비 고
관리사무소	612㎡	
휴게시설	7개소	
어린이놀이터	2,979㎡	
근린생활시설	9,631㎡	
주민운동시설	1,466㎡	
경로당	705㎡	
주민공동시설	5,226㎡	
보육시설	796㎡	
문고	816㎡	

※ 상기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

(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
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	가 구 및 획 지		정비계량계획(동)			
	명 칭	위 치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계	존치	철거후 신축	철거후 이주
기정	돈의문1 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원	152,130.5	-	-	880	5	871	4
변경			152,201.0	-	-	880	53	820	7

②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획지 구분	위치	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층수 (지상 /지하)	높이 (m)	주용도	비고
					기준	상한				
기정	1-1	행촌동 27-1	12,766.10	50이하	-	250이하	23/3이하	70이하	주거	

결정 구분	획지 구분	위치	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층수 (지상 /지하)	높이 (m)	주용도	비고
					기준	상한				
기정	1-2	홍파동 42-1	54,347.70	50이하	-	253이하	23/4이하	70이하	주거 /판매	지번누락 의 정정 및 광장 면적감소
변경			54,476.10	50이하	-	253이하	23/4이하			
기정	1-3	평동 13-1	26,281.40	50이하	-	250이하	23/5이하	70이하	주거/판매	
기정	1-4	교북동 11-2	4,122.80	-	-	-	-	-	주거/판매 /업무	
			990.10	50이하	-	250이하	23/5이하	70이하	주거	주거
			3,132.70	60이하	-	583이하	25/5이하	73이하	주거/판매 /업무	상업
기정	1-5	행촌동 37-26	968.8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-	종교시설	
기정	1-6	홍파동 5-18	702.4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-	종교시설	
기정	1-7	행촌동 158-8	2,496.5	50이하	-	250이하	8이하	30이하	공공청사 (교통순찰대)	
기정	1-8	행촌동 180-10	915.6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청사 (주민 자치센터)	
변경			548.5							
기정	1-9	송월동 116	599.5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청사 (파출소)	
변경			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	주거/판매 /근린생활시설	
신설	1-10	행촌동 180-17	367.1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청사 (파출소)	
신설	1-11	신문로2가 6	9,041.5	60이하	-	150이하	4이하	-	문화시설	

주) 획지 1-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

구 분	기 정	변 경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(변경없음)	○건설규모 : 세대당 전용면적 165㎡이하 ○건설비율 -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 90.5% -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상 9.5%						
	구 분	전용 면적	세 대 수		비 율	비 고	
			소 계				
	계	-	2,415	2,415		100%	
	전용 면적 85㎡ 미만	33㎡	16	2,185		0.6%	
		37㎡	91			3.8%	
		39㎡	232			9.6%	
		42㎡	136			5.6%	
		44㎡	68			2.8%	
		45㎡	75			3.1%	
		59㎡	400			16.6%	
		77㎡	71			2.9%	
		84㎡	1,096			45.4%	
전용 면적 85㎡ 이상	101㎡	130	230		5.4%		
	116㎡	79			3.3%		
	138㎡	21			0.9%		
건축한계선	○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: 3m ○중로3-101호선 상업지역 동측,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: 6m ○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: 8m ○중로2-43호선 북측 도로변 : 10m ○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: 10m ※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	○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: 3m ○중로3-101호선 상업지역 동측,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: 6m ○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: 8m ○중로2-43호선 북측 도로변 : 10m ○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: 10m ○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: 3m(신설) ※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	
	벽면한계선 (변경없음)	○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: 15m ○생활가로변 : 17m ○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: 5m ※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			
차량진입금 지구간 (주차장 설치기준 100%완화)	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 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도록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완화하는 사항임 - 획지1-11(문화시설) 및 공원5 - 획지1-8공공청사(주민자치센터)						

- (바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 (사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 (아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 :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
 (자)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(해당사항 없음)
 (차) 환경성검토결과(변경없음)
 (카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공동주택			비고
	총 세대수	임대주택	구성비(%)	
세대수	2,415	496	20.5	

구분	공동주택				비고
	합계	40㎡이하	40~50㎡이하	50~60㎡이하	
세대수	496	232	204	60	
구성비(%)	100.0	46.8	41.1	12.1	

- ※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
-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
 -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
 - 새문안로~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

5.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
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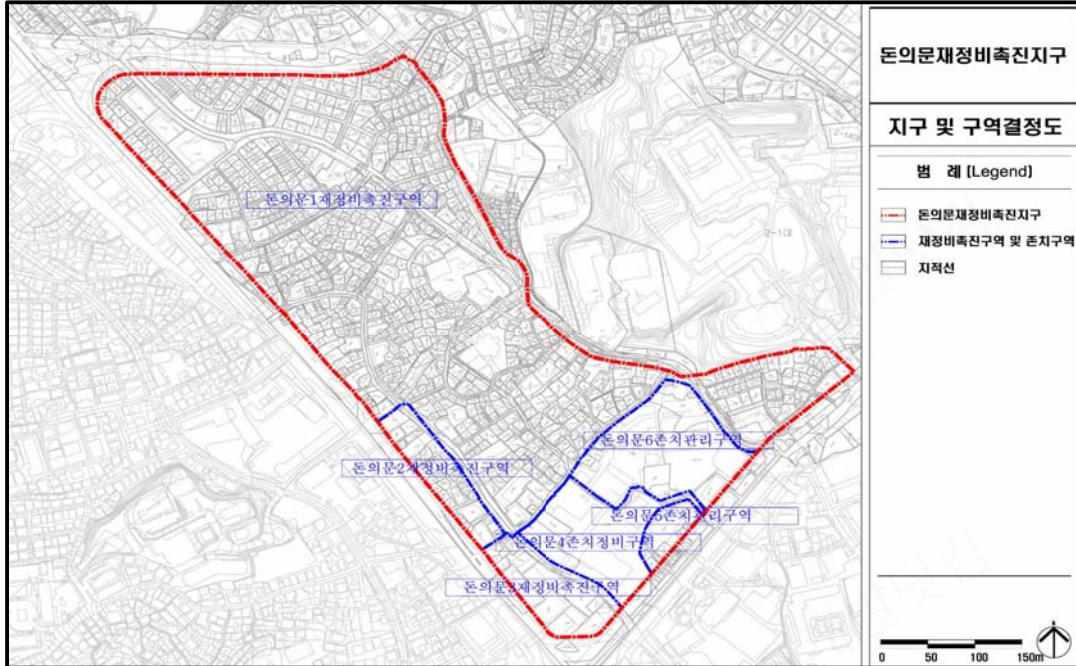
- 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9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7. 지형도면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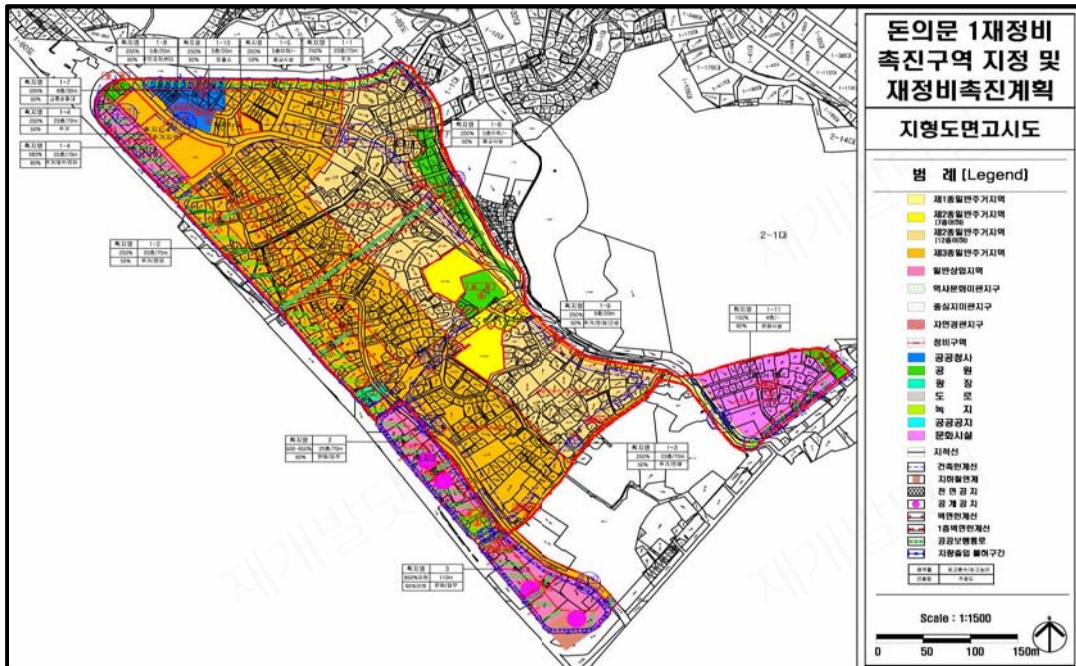
-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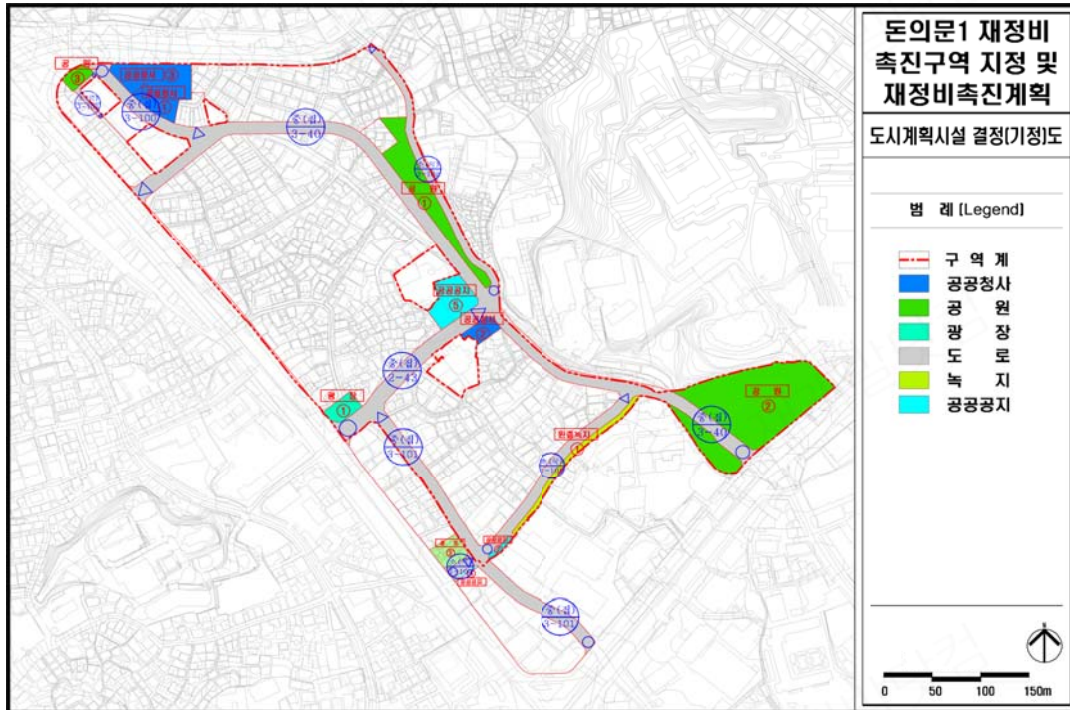
■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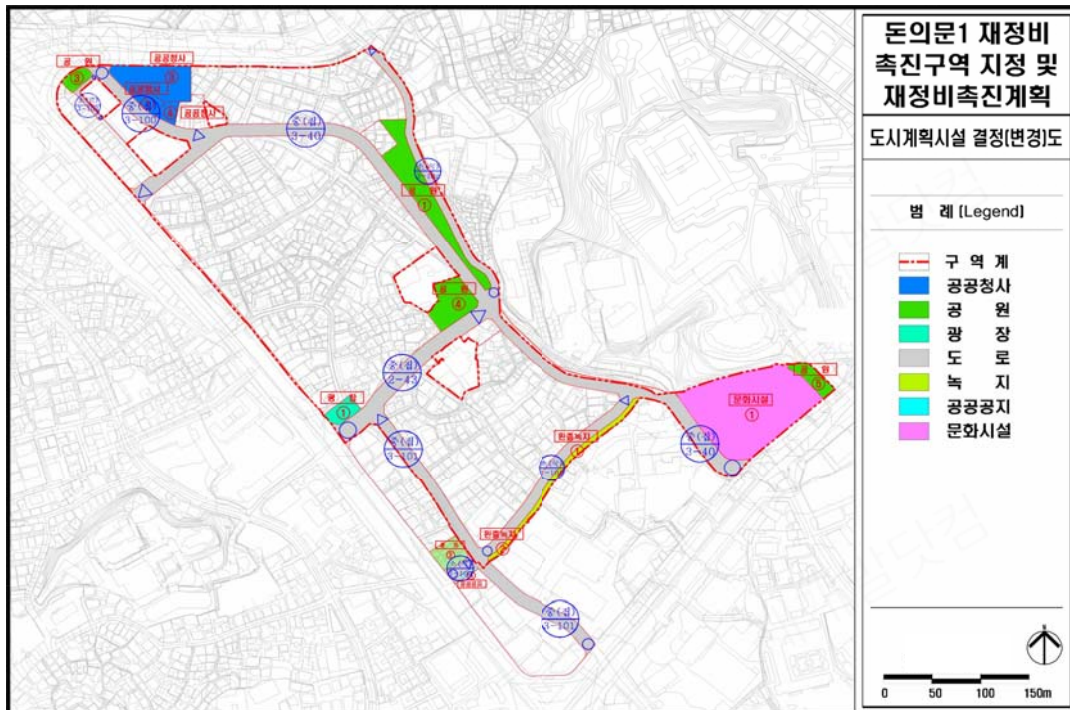
■ 지형도면고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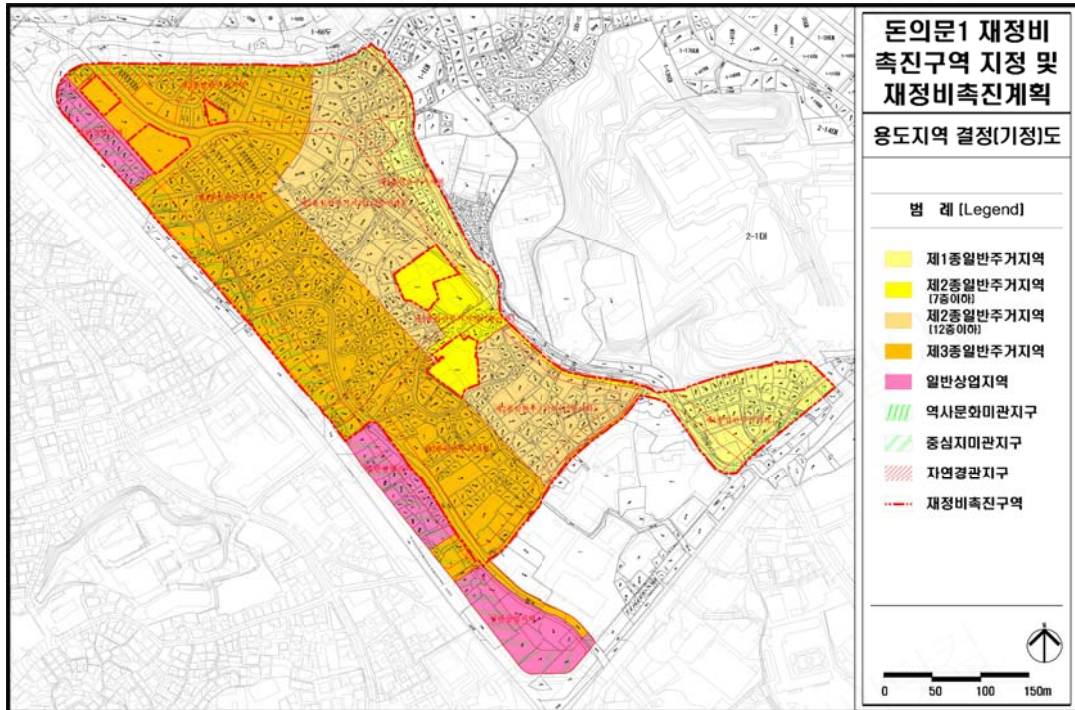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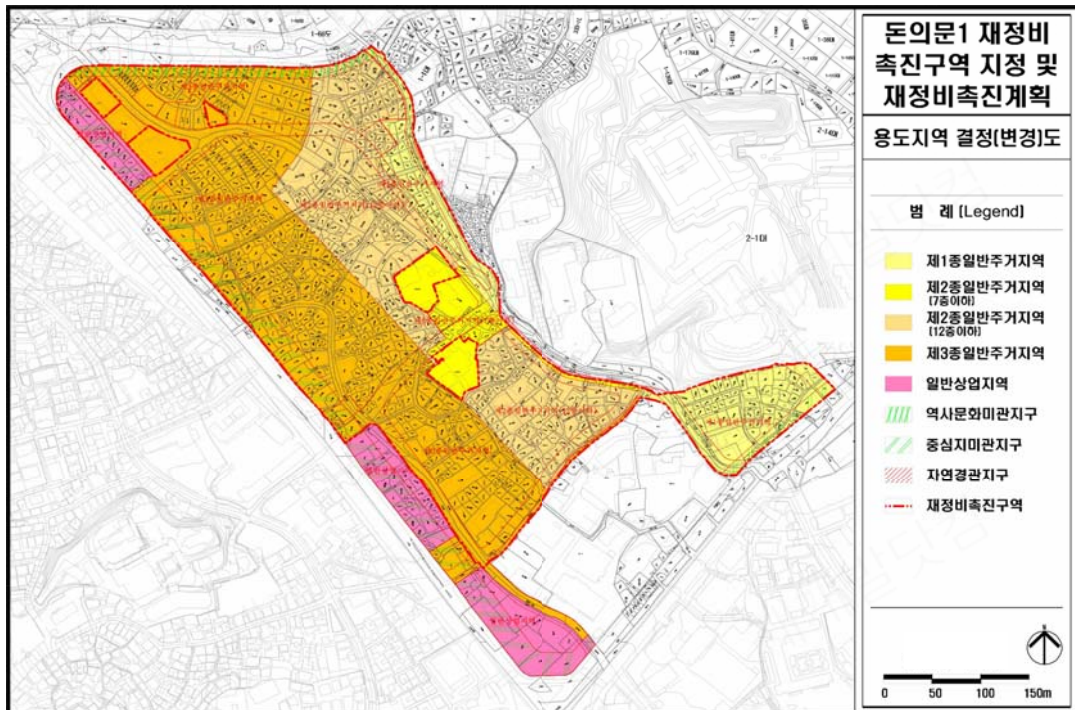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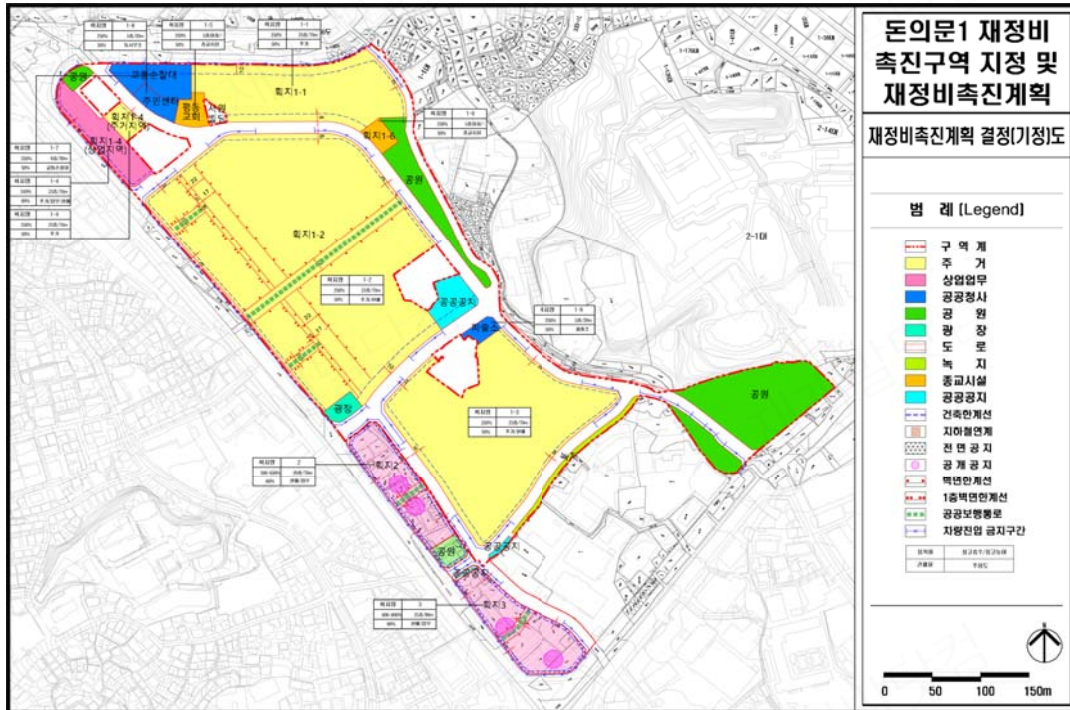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결정도(변경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(기정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(변경)

